

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9. 10. 22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김석진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허 욱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', '다', '라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·반복적 안전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2019-50(서)-277)

- 「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3항에 따라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중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비율(별표1),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(별표2)를 개정하기 위한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9-50(서)-278)

-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및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3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(주)문화방송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(주)문화방송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3제3항제1호	1,500만원

다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9-50(서)-279)

- 「방송법」 제74조제2항 및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원주문화방송(주)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원주문화방송(주)	「방송법」 제74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4항제2호	700만원

라. 협찬고지 법규위반 행정처분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(2019-50(서)-280)

- 제2019-42차 위원회(2019.08.26.)에서 의결한 (주)씨뮤직텔레비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해 아래의 과태료 부과(안)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(주)씨뮤직텔레비전	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